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-1호

「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8일

강 릉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,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5·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까지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(안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:
 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 - 전화: 033-640-4100
 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”을 “국가보훈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”로, “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”를 “해당하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5 · 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수당의 지급대상 등)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<u>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</u>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</u>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수당의 지급대상 등) ① --- ----- <u>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</u> ----- ----- <u>해당하며</u> ----- 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 <u>10. 5·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</u></p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 :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연락처 :

제 · 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